##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47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장철민·김한규·한병도

진성준 • 박정현 • 한정애

진선미 • 조승래 • 이용우

민병덕 · 강훈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법률 제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6조 중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제2항 전 단 또는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 ③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		
	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는 누구든지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96조(벌칙) <u>제25조제1항, 제2항</u>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전단 또는 제4항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